

##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서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별표 5 제2호에서 별표 5 제3호로 현행화

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정비(안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실적 건수,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을 공고토록 함

다. 별지 제11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5 서식의 기재내용, 작성방법 등을 보완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3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매일(이규석) ② (주)엠텍(이규석)  
③ 매일엔지니어링(주)(이기욱)

나. 전화번호 : ① 031-425-7887 ② 043-218-0028 ③ 02-582-3349

2. 명칭 : 유리섬유 및 고인장 현무암섬유를 활용하여 패널의 인장강도 및 휨강도를 향상하고 패널 배면 입체성형을 통해 부착강도를 향상시킨 고내구성 수처리시설물 방수·방식 공법 (ECO-Panel System)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 / 방식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유리섬유 및 천연소재인 현무암 섬유를 적용한 강화 패널을 활용하여 고내구성을 확보하고, 습윤면 접착이 가능한 접착제의 개발을 통해 습윤환경에서의 품질을 확보하였으며, 패널 배면의 입체 성형 기술을 통해 패널-접착제간 부착 시 물리적 고정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장기 부착 안정성을 확보한 수처리 시설물 방수방식 공법에 관한 것이다.

<범위>

생산단계에서 유리섬유 또는 고인장 현무암 섬유 활용 및 배면 입체성형 처리된 ECO-Panel과 습윤 환경에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ECO-Panel 접착제를 이용해 기계적 일체화를 형성하는 ECO-Panel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회수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 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